

의안번호	2213731
의 퇴 인	진성준의원
회 답 일	2026.3.4.
추계번호	25B56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1조의26 신설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 ¹⁾ 을 준용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01조의26 신설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세사유

- 개정안에 따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등 세외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구역별 국·공유지의 포함여부, 무상양여 대상·면적·공시지가 등이 개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으로, 현시점에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